

대법관후보자 3명 모두 국회통과맨 대법관 14명중 문재인 대통령 임명이 8명



- 달라지는 대법원 지형
-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후보 3명 제청

“이번 인사로 사법 권력의 축이 완전히 바뀐 것 같다.”

2일 공개된 신임 대법관 후보 3명의 명단을 확인한 한 관사는 이렇게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 3명이 국회 동의를 받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전체 14명 중 8명이 된다. 행정 업무를 하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 중에서도 과반수인 7명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이 한 명 더 들어서면 전·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대법관의 구성이 ‘5 대 9’로 더 기울어진다. 이렇게 되면 대법관들이 4명씩 들어가는 3개 소부(小部) 판결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법원의 본격적인 ‘지형 변화’가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 보수 성향 2명 대신 진보 성향 2명

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중에서는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5·19기)이 가

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전임자인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은 동아일보가 2016년 대법관 이념 성향을 분석한 결과 가장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다. 두 대법관 모두 2013년 12월 통상임금 사건에서 사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보수 성향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대법관을 진보 성향으로 교체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법원 판결 성향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 또 관사와 검사를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변호사다. 김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이 저를 임명 제청해 주신 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대법원 구성원은 김 대법원장, 박정화 대법관 등 모두 3명으로 늘어난다. 노 후보자까지 합류하면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2. 출신대학 5곳으로 늘어

현재 여성 대법관은 김소영 민유숙 박정화 3명이다. 노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2004년 김영란 전 대법관이 첫 여성 대법관이 된 이후 14년 만에 여성 대법관은 역대 최다인 4명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성 평등 이슈에서 대법원이 전향적인 판단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호주제 폐지와 성매매 관련 관례 검토, 성폭력 사건 재판 처리 절차 등 여성 문제를 다뤘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민유숙 대법관이 지명될 때도 대법원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후보자 세 명 중 고위 법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른바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 한

명에 불과한 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후보자 이동원 전주지법원장(55·17기)은 고려대 법학과 출신이다. 노 후보자는 이화여대 법학과 출신 첫 대법관이 될 수 있다. 세 후보자가 임명되면 대법관들의 출신대학이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 5곳으로 늘어난다.

대법관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되면 8월 2일 이후 대법원에 남는 ‘서오남’은 김 대법원장과 권순일 이기택 김재형 대법관 등 4명뿐이다.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10월 취임 후 첫 기자회견 담회에서 “서오남이 많다는 견해에는 일부 동의한다.”고 말한 대로 대법관 다양화 구상을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동아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법조계 2018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법무뉴스



-8월부터 누구나 동산·채권담보 등기내용 확인 가능-

올해 하반기부터는 누구나 동산·채권담보 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치매환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견인 선임 등 지원에 나선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공익신고'도 할 수 있게 된다. 11월에는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사법부]

◇대법원 법률조사관 신설= 7월 1일부터 대법원에 법원조사관의 일종인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게 된다. 대법원 재판보조인력 다양화를 통해 상고심을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인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형사, 행정사건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조사하는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 7월 1일부터 가정법원의 업무중 △가사소송법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 등의 사무와 △

미성년 자녀가 없는 당사자 간의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사무가 사법보좌관 업무에 추가된다. 판사들의 업무 중 실질적인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비분쟁성 업무를 사법보좌관에게 맡겨 판사들의 업무를 줄이는 대신 그 역량을 사실심 재판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다.

◇누구나 동산·채권담보 등기 열람·발급= 8월 1일부터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신청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담보권설정자의 영업비밀 침해와 신용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담보권설정자와 담보권자 등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신청권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법인은 누구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반면 동산·채권담보 등기사항증명서만 제한이 가해져 형평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와 함께 이날부터 당사자의 합의로 동산담보등기의 담보목적물 보관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사실도 등기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치매환자 후견인 선임·활동 지원 가능= 9월 20일부터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는데도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환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한정후견개시나 특정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치매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장은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함께 청구해야 하며, 국가와 지자체는 선임된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무·검찰]

◇외국인 영주증 10년마다 갱신해야= 9월 21일부터 외국인 체류자격이 대폭 정비된다. 외국인 체류자격은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나뉘고, 일반체류자격은 △관광·방문 등을 위해 90일 이내 머물 수 있는 단기와 △유학·연수·투자 등을 위해 90일 초과해 거주할 수 있는 장기로 나뉘게 된다.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한다. 이미 영주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영주증을 재발급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은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지만, 이날부터는 청구가 없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해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형이나 무기징역, 장기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 피보험자 전자서명도 허용= 11월 1일부터 보험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기존 자필서명 방식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보험계약에 동의할 수 있게 된다.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 전부나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생명보험'을 체결할 때도 전자서명에 의한 동의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사람의 사망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어 현행 상법에서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필에 의한 서면동의만 가능하도록 보험 계약 동의 방식에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라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이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가 보험계약 동의 방식에 추가될 예정이다.

◇귀화 시 국민선서·귀화증서 수여제도 도입=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한 경우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이 귀화·국적회복 허가를 한 때에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도록 했지만, 12월 20일부터는 국민선서를 한 뒤 귀화·국적회복 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국적이 취득된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일반귀화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5년 이상 계속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외국인이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5년 이상 계속해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어야만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변호사업계]

◇공익신고, 변호사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10월 18일부터 공익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공익신고 제보자의 신분비밀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때 신고자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하기 때문에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도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된다.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도 변호사를 통해 대리하면 된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등에도 할 수 있지만, 비실명 대리신고의 경우에는 권익위에만 할 수 있다.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오는 11월 1일부터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각 기관·지역별로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고, 국선대리인 신청 절차와 지원 요건, 자격이나 보수 등은 대통령령이나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각 기관별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타]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1주 최대 노동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50~299명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 5~49명 사업장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6개월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률신문 인용)

법무매거진

대법원 이어 헌법재판소 연내 5명 교체 '진보 사법부'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3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한 가운데 사법부의 또 다른 기동인 헌법재판소도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에만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바뀌고 내년 4월에는 재판관 2명이 더 교체된다.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로 대변되는 대법원발(發) 과격 인사와 함께 헌법재판관까지 대거 교체되면 사상 초유의 '진보 사법부'가 탄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률가인 김 변호사에 대한 논란은 법원 안팎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법시험 수석(제27회) 출신으로 노동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법정의 신사'로 불릴 만큼 인품도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지만 대법관이 되기엔 편향된 인물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변호인 단장을 맡았던 이력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전날 김 변호사 임명 제청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던 자유한국당은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대법관에 편향적인 인사가 들어간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 전직 대법관은 김 변호사는 법리적 판단력에 결코 모자람이 없는 법조인으로 양승태 법원에서 대법관이 됐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균형추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미 운동장이 진보 성향으로 기운 상황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퇴임하고 11월 김소영 대법관까지 임기를 마치면 대법관 13명 중 8명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채워진다.

대법원과 함께 최고법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현재도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진성·김이수·김창중·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9월 19일 임기가 만료돼 재판관 과반 이상이 교체된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 인사와 달리 헌법재판관은 국회가 3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돼 있다.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 5명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2명, 새누리당 1명, 민주통합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지명해 임명된 인사들이다. 비교적 보수적 색채가 뚜렷하게 반영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임명될 재판관들은 정 반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의 지명권을 행사하고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지명한다. 최소 3명의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의 인사들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 임기를 마친다. 이들의 후임 재판관은 문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진보적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했다. 내년 4월 이후 현재를 책임질 재판관 9명의 면면을 예상해 보면 ‘쏠림’ 현상이 더 뚜렷해진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던 이신애 재판관과 올해 야당이 지명할 한명을 제외하면 7명의 재판관이 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 여당, 여야 합의 지명으로 임명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시절 보수 성향 법관들이 사법부를 채웠던 것처럼 앞으로는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대법원과 현재를 장악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

최근 현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과 관련해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을 선고했고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향후 ▶동성애 ▶국가보안법 ▶사형제 ▶최저임금제 같은 주요 이슈들이 현재의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전직 고법 부장판사는 “정권의 성향에 따라 사법부의 구도가 급변하는 일은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늘 반복돼 왔다.”며 “정권에 관계없이 흔들림 없는 굳건한 사법부를 기대하는 일은 아직 요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인용)

헌법재판관 구성 어떻게 바뀌나

2018년 7월

		지명주체
	이진성 — 현재 소장	대법원장(양승태) 현재소장 임명=대통령
	김이수	국회(민주통합당)
	김창중	대법원장(양승태)
	안창호	국회(새누리당)
	강일원 — 재판관	국회(여야 합의)
	서기석	대통령(박근혜)
	조용호	대통령(박근혜)
	이신애	대법원장(양승태)
	유남석	대통령(문재인)

2019년 4월

	— 현재 소장	대통령(문재인)
		국회(야당)
		대법원장(김명수)
		국회(여당)
	— 재판관	국회(여야 합의)
		대통령(문재인)
		대법원장(김명수)
	이신애	대법원장(양승태)
	유남석	대통령(문재인)

법무매거진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 신설...
대법관 14명→26명으로 증원 추진



	현행	개정
대법관 수	14명	26명
대법관 구성	제한 없음	현직법관 아닌 사람 3분의 1 이상
헌법재판관 3명 지명권	대법원장 전권	추천위원회 신설
사법행정기구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위원회
법원장 선정권한	대법원장	관사회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장이 차관급으로 선발	폐지
법관 퇴직후 청와대 근무	제약 없음	퇴직 후 2년 이내 불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직 판사가 대다수	현직판사 불가
법관인사	대법원장 전권	변호사단체 의견 반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2배 가까이 늘리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법원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경향신문이 5일 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은 현직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뽑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로 국회와 전국법관회의가 선출하는 위원 12명으로 이뤄지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전국의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발탁하지 않고 관사회의에서 뽑도록

했다. 중견 판사들이 소신을 꺾고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도 폐지한다. 대신 비슷한 경력의 고등법원 판사 3명이 재판부를 이뤄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도록 했다. 또 법관 인사에 변호사단체의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 출신 안호영 의원이 함께 추진한 것으로 안 의원이 다음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당 의원들의 충분한 공감대를 얻어 준비해온 것으로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시

작되면서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전문가와 시민 단체는 물론 대법원의 의견도 듣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 들여다보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사법행정권을 판사들이 주도하는 판사회의, 국회가 관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분산한 것이 특징이다.

경향신문이 5일 확보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사법행정을 명분으로 전국의 판사들을 통제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인사, 예산을 비롯해 사법제도 연구, 판사 교육 등을 관장하게 된다.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가 추진한 사법평의회와 비슷하지만, 사법행정위는 법원 내부 조직이란 점이 다르다. 대법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전국법관회의에서 5명을, 국회가 6명을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고 현직 판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사법평의회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라는 면에서 동의하지만 외부의 영향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방안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내부 조직이어서 받아들일 만하다."고 말했다.

대법관 12명이 연간 4만여건을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대신 대법관 수를 늘리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개정안은 26명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빼면 상시적으로 재판하는 대법관이 12명인데, 앞으로 행정처를 없애면 상시 대법관이 25명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3개의 소부(小部)를, 5명으로 이뤄진 소부 5개로 늘릴 수 있다. 민사

부, 형사부, 특별부처럼 독일식 재판부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진다. 관례 변경 등 주요 판단은 전체 대법관의 절반 이상 참여로 가능하게 했다. 현재는 3분의 2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의 3분의 1은 최근 5년 동안 판사로 일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제청하고 임명토록 했다.

개정안은 법관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란 헌법을 무시하고 위계질서를 구축해온 제도도 없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법원장을 판사회의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임기는 2년이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선발제도도 없었다. 고법 부장은 공용차량이 제공되는 등 차관급 대우를 받는데, 이 자리에 뽑히지 않으면 사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판사들이 대법원 눈치를 보면서 판결을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경력이 비슷한 고등법원 판사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하고 재판장은 돌아가면서 맡는다. 대법관을 보좌하는 연구관을 현직 판사는 맡지 못하게 했다. 법원 관계자는 "독립된 판사가 대법관을 보좌하는 것이 당초 이상한 발상이며, 그 안에서 판사들이 지시에 순응하는 습관을 들여 일선에 전파하는 부작용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판사는 맡지 못하게 했다.

법관 인사에는 변호사단체의 법관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데, 대법관 제청 때와 같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하도록 바꿨다.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를 자문기관에서 심의·의결기관으로 격상하고, 현재 대법원 규칙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설치 근거도 법원조직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 판사를 그만두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지 못하게 했다.

(경향신문 인용)

법무매거진

법원행정처, 대법관 인사청문 지원 중단 추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법원행정처의 청문회 개입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3일 예정된 회의에서 이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행정처 소속 판사 총 9명이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김선수(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17기)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여·19기) 법원도서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날 “이상엽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지난 4일 발의한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원 중단 의안’이 법관대표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다는 점에서 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오는 11월 퇴임할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자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엽 판사는 발의안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처가 (향후)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회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재판이 사법행정에 흔들릴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 과정에서 행정처가 주도해 마련한 답변이 반복됨에 따라 행정처와 대법관 후보자 사이에 주요 이슈에 관해 이해관계를 공유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면서 “재판과 사법행정의 분리를 위해서라면 대법원 재판을 맡을 대법관 후보자부터 행정처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처가 청문회 지원을 이유로 정치권과 접촉하는 것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만 낳는다.”고도 비판했다. 이 판사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후보자가 자비로 컨설팅팀을 만들어 청문회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도 전속 연구관이 될 연구관이 청문회 준비를 맡고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법관대표들은 임시회의에서 발의안에 대해 논의한 후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법원 내부에서 오랜 논쟁거리였던 청문회 지원 문제는 이번에도 벌써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 판사는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해놓고 그 이후 실제 임명 과정까지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법관대표인 A 판사도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는 대법관 임명 과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는데, 법원 외에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원기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문화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검찰 '공안부' 55년만에 사라진다... '공익부'로 조직개편



검찰에서 안보와 대공, 선거·노동사건 등을 담당해온 공안(公安)부가 '공익(公益)부'로 명칭을 바꾸고 조직을 개편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검 공안부를 '공익부'로 개편하기 위해 오는 16일까지 각 지검과 지청 공안담당 검사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했다. 대검은 이에 대한 찬반 의견과 그 이유를 회신해 달라고 했다. 공문에는 '다른 의견 불요(不要)'라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져 명칭은 공익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공안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관련한 대공·테러 사건과 선거·노동·집회 관련 사건 등을 맡아왔다. 그동안 공안부가 선거·노동 사건 등에서도 공안적인 시각에서 처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이같은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에는 현재 대검 공안부장을 공익부장으로, 공안기획관은 공익수사지원정책관으로 바꾸면서 공안 1~3과를 안보수사지원과, 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검의 공안부 명칭도 공익부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지난달 공안과 관련해서 전문 분야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안 개념은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분야로 한정하고, 선거·노동 분야를 공안 영역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안부는 1963년 서울지검에 처음 생겼다. 10년 뒤인 1973년 대검 공안부가 신설됐고 전국 각 검찰청에도 차례로 설치됐다.

명칭 변경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대한 대통령령'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조선일보 인용)

법무매거진

대법관에서 ‘시골 판사’로… 박보영의 아름다운 퇴장



법조인 동정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청조근정훈장을 수여받고 있는 박 전 대법관〉

올 초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 작은 도시에서 소액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일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월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이후 사법연수원과 한양대 로스쿨에서 교수 일을 하다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 임용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군 법원은 여수시법원·태백시법원·영광군법원·부안군법원 등 전국에 100곳이 있다. 화해·조정·즉결심판·협의이혼 사건이나 다루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등을 지역주민들이 너무 먼 곳까지 나가지 않고도 판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소규모 법원으로 한 명의 판사가 일하는데, 건물도 단독으로 있기보다 관할 법원 등기소 등과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



〈전남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여수지법원·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등기소 건물. 중앙에 조그만 법원 마크를 달고 있는 왼쪽 건물이야. 오른쪽 여수소방서보다 작다〉

시·군법원 판사는 소위 말하는 ‘인기있는 자리’는 아니다. 전임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 2010년을 끝으로 전임 시·군법원 판사 임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 관할 법원 판사들이 순환근무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 이번에 전임으로 임명될 경우 이는 5년 만의 일이 된다.

다만 박 전 대법관의 임용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법관인사위원회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최종임용이 확정된다.

전직 대법관들은 임기를 마치고 2년이 지나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전직 대법관들이 대형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법원 사건들을 맡아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 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역 주민들과 직접 만나며 재판 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신속한 고품질 재판 제공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김현 협회장은 “전관예우 효과에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다”며 “다른 전·현직 대법관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김선수 변호사로부터 “대법관이 된다면 전관예우 철폐를 위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법무매거진

이진성 재판소장,
베니스위원회 총회 특별연설
-인류에 바탕둔 정의 실현 강조-



법조인 동정



〈베니스위원회 회의장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6월 23일(현지기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115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서 ‘한국 법치주의의 역사와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성과’를 주제로 특별연설을 했습니다.



〈베니스위원회 회의장에서 지아니 부키키오 베니스위원회 위원장과 악수하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이날 연설에서 이진성 재판소장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인류애에 바탕을 둔 정의를 실현할 때, 비로소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판소장은 “정의와 평화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며, ‘이는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